#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57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 : 용혜인 · 채현일 · 백승아

김남희 • 복기왕 • 김성환

소병훈 · 백선희 · 김준형

정춘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,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관에 대해서는 복종의무만을 명시할 뿐,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음.

실제 지난 '12.3 내란 사태'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,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.

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

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,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.

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'군인복무기본정책서(2018~2022)'에서는 "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"라고 적시하면서, 부당한 명령(사적 지시,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,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)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를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.

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,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, 민주주의를 수호하며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 법률 제 호

#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명령 복종의 의무) 군인은	제25조(명령 복종의 의무)
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	
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	
<단서 신설>	다만,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
	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
	거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
	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
	<u>아니한다.</u>